



보 도 자 료



| | |
|---|--|
| 보도 일시 (인터넷) 2022. 2. 8.(화) 10시 (지 면) 2022. 2. 8.(화) 10시 | 배포 일시 2022. 2. 7.(월) 15:30 |
| 담당 부서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| 책임자 과 장 유희승 (044-203-6445)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(044-203-6497) |

사립유치원,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

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월 8일(화)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(기획재정부 소관)이 심의·의결됐다고 밝혔다.
-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‘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’을 발표(2021.3.11.)한 바 있다.
 -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*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,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 - * 2013.2월 ‘사회복지서비스업’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)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됨
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중 유치원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이번 시행령 ‘ [별표]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·중견기업의 해당업종’에 유치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: 유아 교육기관, 8511)을 포함한다.
 -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이어야 하며,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*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.

* 기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, 기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, 법률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, 질병의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
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5조제8항)

※ 전체 사립(사인)유치원(3,102개원) 중 73.4%에 해당하는 2,277개원의 사립(사인)유치원이 10년 이상 운영 중으로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(2021.4. 교육통계 기준)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“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(발췌)

[별표]

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(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

1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

|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| 가업 해당 업종 |
|--|---|
| 가. 농업, 임업 및 어업 (01 ~ 03) | 작물재배업(011)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(01123)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[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및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자산의 가액] ÷ (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) |
| 나. 광업(05 ~ 08) | 광업 전체 |
| 다. 제조업(10 ~ 33) | 제조업 전체.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(사업장이 국내 또는 「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)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1)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(고안·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)할 것 2)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)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|
| 라.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, 환경정화 및 복원업(37 ~ 39) | 하수·폐기물 처리(재활용을 포함한다), 원료 재생,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|
| 마. 건설업(41 ~ 42) | 건설업 전체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바. 도매 및 소매업 (45 ~ 47) | 도매 및 소매업 전체 |
| 사. 운수업(49 ~ 52) | 여객운송업[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(49), 수상운송업(50), 항공 운송업(51)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] |
| 아. 숙박 및 음식점업 (55 ~ 56) | 음식점 및 주점업(56) 중 음식점업(561) |
| 자. 정보통신업 (58 ~ 63) | 출판업(58) |
| | 영상·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(59). 다만,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(59142)은 제외한다. |
| | 방송업(60) |
| | 우편 및 통신업(61) 중 전기통신업(612) |
| |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62) |
| | 정보서비스업(63) |
| 차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0 ~ 73) | 연구개발업(70) |
| | 전문서비스업(71) 중 광고업(713)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(714) |
| |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72)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729) |
| |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3) 중 전문디자인업(732) |
| 카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(74 ~ 75) |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(74)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 |
| | 사업지원 서비스업(75)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(751,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),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(7531), 보안시스템 서비스업(7532),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(75991),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(75992), 포장 및 충전업(75994) |
| 타. 임대업 : 부동산 제외 (76) | 무형재산권 임대업(764,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파. 교육서비스업(85) | 교육 서비스업(85) 중 유아 교육기관(8511), 사회교육 시설(8564), 직원훈련기관(8565),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(85669) |
| 하. 사회복지 서비스업(87) |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|
| 거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90 ~ 91) | 창작,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0)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(901), 도서관,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(902). 다만, 독서실 운영업(90212)은 제외한다. |
| 너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94 ~ 96) | 기타 개인 서비스업(96)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(96993) |

2.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

| 가업 해당 업종 |
|--|
| 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|
| 나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|
| 다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|
| 라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|
| 마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|
| 바. 「해운법」에 따른 선박관리업 |
| 사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|
| 아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(카지노업,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) |
| 자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|
| 차.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|
| 카. 「전시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전시산업 |
| 타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|
| 파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|

| |
|---|
| 하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|
| 거.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|
| 너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|
| 더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 |